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학생상담센터), 02-970-9006

제정 2020. 09. 09. 개정 2021. 2. 17.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에 부속시설로 규정된 학생상담 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조직) ① 센터에 심리상담부, 정신건강증진부를 둔다.
  - ② 각 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  - 1. 심리상담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상담과 집단상 담,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,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.
  - 2. 정신건강증진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, 홍보, 기타 프로그램과 재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을 기획 및 운영한다.
- 제3조 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4조 (상담원) ① 센터에는 전임상담원, 시간제상담원,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전임상담원은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담관련 2급 이상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한다.
  - ③ 시간제상담원은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상담관련 2급 이상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한다.
  - ④ 객원상담원은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상담관련 2급 이상 자격 중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담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.

- 제5조(업무) 센터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건전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개인상담
  - 2. 집단상담
  - 3.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
  - 4.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
  - 5. 정신건강 증진 교육·홍보·기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  - 6. 재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
  - 7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 (개인정보 보호) ① 상담센터에 소속된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상담센터를 이용한 본인 및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정보를 해당 관련 전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#### 제2장 운영위원회

- 제7조(설치)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  - 1. 센터의 운영, 정책 및 사업 계획
  - 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
  - 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, 교무부처장, 생활관장, 교육혁신부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10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②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제1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  - ② 간사는 학생상담센터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#### 제3장 자문위원

제14조(자문위원) ① 센터 운영 및 사업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교내·외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## 부 칙(제563호, 2020. 09. 0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 부 칙(제582호, 2021. 2. 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